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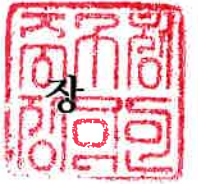
143  
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1- 호

이 조례(안)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  
· 규칙심의회,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  
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서울특별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 
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 
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 
합니다.

2021년 10월 7일

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



서울특별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## 1. 개정이유

- 자활기금은 법적규정에 의한 기금이며, 자활기금 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이  
필요하므로 올해 말로 종료 예정인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 
「서울특별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를 일부 개정하고자함

## 2. 주요내용

- 제13조(기금의 존속기한)에 규정한 기금 존속기한 변경
- 자활기금 존속기한을 “2021년 12월 31일”에서 “2026년12월 31일”로  
변경

#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10월 2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참조 : 사회복지과장, 주소 :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사회복지과, 전화 : 02-3396-5395, 팩스 : 02-3396-8736, email : eszaq1@junggu.seoul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※ 이 조례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(<http://www.junggu.seoul.kr>)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.

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서울특별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(기금의 존속기한) “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,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”를 “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,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”로 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3조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,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</p>	<p>제13조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,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</p>